

경계심 풀린 광주 업소들 '방역은 남 얘기'

코인노래방 명부 작성 않고 마스크 미착용 입장 등 형식적 방역
PC방·헌팅포차 등선 거리두기 무시 일쑤...재확산 우려 목소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지 20일이 지났지만 시민들이 생활방역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면서 자칫 재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경기지역 코인노래방 등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속출했음에도, 광주 도심 내 코인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조치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3일 밤 9시께 찾은 광주시 서구의 한 코인노래방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입장이 가능했고 출입자 명부 작성, 마이크 덮개 착용 등의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노래방을 이용하는 손님이 바뀌었지만 해당 노래방 방역 소독은 실시되지 않았다. 손님도 마이크 덮개만 바꾸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인천에서는 코인노래방을 다녀온 고등학생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개교가 미뤄진 바 있다.

광주시가 지난 21일 "광주시내 74곳의 코인노래방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며 방역 지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심각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PC방도 비슷한 상황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한 칸씩 거리를 두고 이용토록 하는 지침은 아예 무시됐다. 이용자들이 사용한 키보드 소독도 마우

스를 수건으로 1~2차례 닦는 형식적 수준에 그쳤고 입이 닿는 헤드셋을 소독하는 모습은 아예 찾아볼 수 없었다.

광주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클럽 등 유흥시설이 문을 닫자 젊은층이 몰리고 있는 헌팅포차 등의 방역 지침 준수 여부도 느슨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13일 광주시내 감성주점 2곳, 클럽 16곳, 유흥주점 673곳, 콜라텍 10곳 등 모두 701곳을 상대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20~30대 젊은층의 발길은 클럽이 폐쇄되면서 상무지구 일대 헌팅포차로 이어졌다.

일부 헌팅포차는 입구에 '2m 이상 거리를 두고 대기하라'는 안내문을 써붙여놓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앞뒤로 다닥다닥 붙어 서서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하는 손님들이 쉽게 눈에 띄었고 업체측도 적극적으로 권고하거나 제지하지 않았다.

입구에 비치된 출입명부도 비치했는지 여부를 보여주지 못한 수준에 불과했다. 허위로 기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불가능하다보니 제 멋대로 써도 신경을 쓰지 않았고 마스크도 없이 테이블 이곳저곳을 누비며 술잔을 돌리는 손님들이 적지 않았다.

광주시가 오는 26일까지 예정된 클럽 등을 대상으로 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



23일 밤 광주시 동구의 한 코인노래방을 찾은 손님이 덮개를 씌우지 않은 마이크를 든 채 노래를 부르고 있다.

한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온 국민이 내 일처럼 나서지 않으면 공든 탑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방역 당국은 물론 사회 구성원 전체가 총력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방역 관련 전문가들은 "치료 약과 백신이 없어 일상에서 코로나바이러스를 끼고 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만 청정한 생활 방역 환경이 유지되도록 사회와 지자체,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

보이스피싱 피해 해남 유명 사찰 스님 현금 1억7700만원 두차례 걸쳐 당했다

경찰청 직원 사칭 전화에 속아
돈 찾아 차량 트렁크에 넣어둬
돈가방 훔친 말레이시아인 구속

해남의 한 유명 사찰 내 암자 주지 스님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으로 1억 7000여만원의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남부경찰청은 지난 11일 해남군 한 우체국 앞에 세워놓은 모 사찰 암자 주지 A(72)스님 차량 트렁크에서 5700만원이 든 가방을 훔친 혐의로 말레이시아인 B(27)씨를 구속, 수사중이다.

A 스님은 이날 오전 "개인정보가 유출돼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으니 돈을 찾아 차 트렁크에 넣어두면 우리가 안전하게 보관한 뒤 돌려주겠다"는 경찰청 직원 사칭 전화를 받고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 5700만원을 인출, 차 트렁크에 넣어놓았다.

A 스님은 트렁크에 넣어둔 돈이 사라져도 경찰이 가져간 것으로 생각했다.

A 스님은 다음날인 12일 오후에도 같은 전화를 받았다. 이번에도 같은 계좌에서 1억 2000만원을 찾아 트렁크에 넣어두고 다른 일을 보는 사이에 도난당했다.

A 스님은 그제서야 보이스피싱임을 눈치채고 경찰청에 신고했지만 이미 모든 돈은 사라진 상태였다.

경찰은 말레이시아인 B씨를 붙잡아 "트렁크에서 돈을 빼내 보이스피싱 조직이 시킨 대로 서울 지하철 역 화장실로 가져다놓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B씨는 돈을 가져다 놓는 대가로 15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 14일 광주시 남구 방림동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60대 여성이 "문 앞에 놓아두라"는 보이스피싱범의 전화에 속아 놓아둔 현금 9000만원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훔친 혐의로 받고 있지만 1억2000만원을 훔친 범행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신호 위반 오토바이 운전자 숨지게 한 과속 운전자 항소심도 무죄 법원 "제한속도 지켰더라도 사고 피할 수 없었다" 판결

제한속도를 넘겨 달리다 80대 오토바이 운전자 숨지게 한 30대 여성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2부(부장판사 김진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9일 오전 순천시 해룡면 평화마을 교차로에서 북서고 방면으로 제한속도(50km)를 넘어 시속 83km로 달리다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 B(82)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제한속도인 시속 50km를 지켜 운전했다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ABS가 장착된 A씨 차량의 경우 제동거리 산출이 불가능해 급정거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인 '사고 회피 가능성'을 추정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어 ABS 미장착 차량의 정지거리 산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추정 결과

를 반영했다. 정지거리는 장애물을 발견해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까지 이동한 거리인 '공주거리'와 브레이크가 작동한 때부터 자동차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인 '제동거리'를 합한 것이다.

ABS 미장착 차량이 시속 50km로 달리다가 급정거할 경우 공주거리는 약 13.8m다.

여기에 제동거리(32m)를 더한 정지거리는 45.8m가 필요한 것으로 나오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피해자 발견 가능 예상지점부터 사고 발생지점까지의 거리는 이보다 짧아 "제한속도를 준수했다더라도 교통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추정 결과를 인정할 수 있다는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해당 도로를 자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도로 상황에 대한 사전 인식과 피해자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진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는 별개의 것"이라며 "A씨 차량과 같은 ABS 장착 차량의 제동거리가 미장착 차량보다 짧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도 반영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어느 청년 노동자의 쓸쓸한 죽음

전국 떠돌다 지난해 취업 정착...공장 파쇄 설비에 끼어 숨져

가 파쇄 설비에 끼어 현장에서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일, 물건을 납품하러 공장을 떠난 동료 대신, 청소를 하러 기계 장치 위에 올라갔다가 변을 당했다.

경찰과 화사측은 기계 가동 시간이 아끼고 자신의 업무가 아닌데도, 본인이 정

소를 하러 올라갔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 공장에서 근무했다. A씨는 불우한 가정환경 탓에 머물 곳도 없이 전국을 떠돌다 공장 일을 배우며 원룸이지만 거처도 생겼다. 동료

직원들도 A씨가 예전보다 얼굴이 한층 밝아졌고 업무도 잘 처리했다고 한다.

어린 시절 이혼한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10년 만에 연락이 닿은 남동생 외에 장례 절차를 주관할 가족과 친지도 없어 장례식도 하루만에 치러졌다.

경찰과 노동청은 공장의 안전수칙 이행 여부와 안전관리·감독 여부 등을 살핀 뒤 업무상 과실 여부를 판단해 입건할 방침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식중독 빵' 유명제과점 대표 항소심서 무죄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체에 오염된 '공룡알빵'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유명제과점 대표이사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박현)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3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모 제과 대표이사 A(75)씨에 대한 항소심에

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같은 회사 지점 B 점장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유지하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8월 17일 식중독 원인 병원체인 황색포도알균에 오염된 '공룡알빵'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졌다. 공룡알빵은 바게트 빵을 반으로 잘라 빵 속을 파내고, 그 안에 삶은 달걀 등을 채우는 방식으로 만든 빵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식중독 발생 원인은 지점 내 식재료 관리, 저장시설 또는 직원 위생관리 영역에서의 문제일 것으로 추정되고 해당 부분은 지점장 지배영역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표이사인 A씨가 빵에 식중독 원인균이 존재할 가능성에 관해 미필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해당 지점 점장으로 전반적 관리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점을 들어 "어떤 형태로든 식재료·시설·직원 관리 등에 문제가 있어 삶은계란과 공룡알빵에 식중독 원인균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